



환자인 허○○을 진료한바 우측고관절의 장애율이 10%이고, 우수부제5수지는 장애가 없었으며 총지급률(후유장애율)이 40%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손○○와 허□□로부터 "보험회사와는 이야기가 다 되어 문제가 없으니 허○○의 후유장애율을 50%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"라는 부탁을 받고 '장애진단서(생명보험용)'에 허○○의 우측고관절 장애율을 20%, 우수부제5수지 장애율을 5%, 총지급률(후유장애율)을 55%로 허위 기재하고 피의자의 이름 옆에 피의자의 도장을 찍었다.

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○○에 대한 장애진단서(생명보험용)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#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# 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

##### 1. ■■■■■, 허○○, 허□□, 손○○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

##### 1. ■■■■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

##### 1. 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

##### 1. 수사보고(진료기록부 첨부 및 상해진단서 발급여부 확인), 수사보고(후유장애진단서 사본 첨부), 수사보고(허○○의 후유장애진단서 등 첨부), 수사보고(피내사자 ■■■■■ 단서 검토서 첨부),

### 법령의 적용

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형법 제233조(벌금형 선택)

#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, 제69조 제2항

## 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### 양형의 이유

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.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중대하다.

다만, 피고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, 범행이 1회에 그친 점,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,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,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 김상운      \_\_\_\_\_